

의안번호	제 235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3월 일 (제407회)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3월 7일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이육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
----------	-----

발의연월일 : 2023년 3월 7일

발 의 자 : 이육회 · 김현문 · 이정범  
박병천 · 박용규 · 박재주  
유상용 의원

## 1. 제안 이유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정보화 정책 추진과 정보화 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보화 활용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보화 추진 기본 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바. 지능정보화책임관제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3조)

아. 협의체 구성 및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안 제15조)

자. 정보시스템감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예산과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교육기관의 정보화 기본 방향 설정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교육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5. “지능정보화”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6. “정보문화”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활양식을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3호에 적용한다.

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학생, 학부모,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이하 “교육관계자” 라 한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2.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9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3. 정보의 공동 활용
4.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5. 정보화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6.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7.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교육감은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청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

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 활용 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지원
8.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분석
4.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
5. 주요 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6. 그 밖에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예산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운영부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직속기관의 장
2.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과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1.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학생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협의체 구성)**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내부 직원 및 정보화업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① 본청 각 부서의 장과 본청을 제외한 교육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정보의 공동 활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 보안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본청 각 부서의 장과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정보화 사업의 범위, 사전 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정보시스템 감리) ① 교육감은 본청 각 부서의 장과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효율성, 기술적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

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가치관·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전자정부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5.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 가. 행정기관
  -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4.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감리원”(監理員)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2. 11. 10.] [교육부훈령 제419호, 2022. 11. 10., 일부개정.]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교육분야 정보화 정책·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교육분야 정보화 정책과 교육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4.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육행정 업무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운영
  6. 제14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③ 교육정보화과장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의 교육부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화과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교육정보화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발주 4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교육정보화과장에게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화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성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자원 통합 가능성
3. 요구사항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여부
4. 관련 표준·제도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사전협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교육정보화과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관리·운영, 노후장비 교체, 단순 하드웨어 구매,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회선 증설 등의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 신청에 대한 검토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수당 등)

####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정보화 기본 방향 설정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화 정책 심의를 위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은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